



2006. 10.

—2006年度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—
專門委員 檢討報告



企劃行政委員會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12일

제안 이유

○ 오송국제하이테크 박람회 개최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와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

○ 단순한 볼거리 제공이 아닌 참여기업의 홍보와 판로개척, 초일류 기술과 정보의 교류, 기업과 투자자 간 파트너링 구축 등을 통해 기업에 실익을 주는 비즈니스페어 기능 강화에 따른 시설 확대 추진과 변화하는 건축 양식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의 증액사유 발생과

○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는 청원군 소유의 임야와 청원군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충청북도 소유의 잡종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《 재산의 취득 :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》

- 위 치 :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
- 사업규모
 - 토지매입 : 1필지 33,000m²(변경없음)
 - 건물신축 : 지상 1층 3,300m² ⇒ 지하 1층/지상 2층 4,533m²
(철근콘크리트 슬라브)
- 사업기간 : 2005. 11 ~ 2008. 5.
- 사 업 비 : 9,500백만원 ⇒ 13,400백만원(도비)

《 재산의 교환 :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등 교환 》

- 교환대상
 - 도유재산 :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263-14외 12필지 7,294m²
 - 공유재산 :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7외 1필지 15,683m²
- 재산가액
 - 도유재산 : 655,158천원
 - 공유재산 : 655,076천원

※ 재산가액은 예비감정 평가액으로 교환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가약을 산술평균하여 결정
- 교환시기 : 2006. 10 ~ 12.
- 사 업 비 : 비예산

□ 검토 의견

○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《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》은

-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시설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에 따른
2005년 제245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오송전시컨벤션
센터의 재산취득 확대를 위한 사항이며,
-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는 청원군의
소유 임야와 청원군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우리 도
소유의 잡종재산으로 교환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
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
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
다음과 같습니다.

○ 먼저, 오송전시컨벤션 시설확충에 따른 공유재산의 변경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.

- 본 사업은 우리 도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
체계적 육성과 세계적인 융합기술(BINT)클러스트의 중심
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
- 2005년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
얻은 사업으로
- 당초 지원시설용지 부지매입 33,000㎡, 건축신축 3,300㎡,

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최신식 컨벤션전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

- 건축신축 4,533㎡, 사업비 134억원으로 확충, 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변경추진 하려는 것으로
- 오송국제바이오테크 박람회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확대 등 홍보관, 전시시설의 기능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계획 변경으로 이해됩니다.
- 그러나, 건축비 증액 요인이 되는 오송국제하이테크 박람회 연기한 사유 및 건축규모를 확장하는 사유, 그리고 134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, 컨벤션시설 유지 방안과 예상관리 비용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음, 재산의 교환 취득에 관한 것으로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취득 계획임.

-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이 소재한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17외 1필지 15,683㎡(재산가액655,076천원) 청원군 소유의 것과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263-14외 12필지 7,294㎡ 우리 도 소유의 잡종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써
- 재산권과 사용권을 일원화를 통한 공공용 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환 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

없습니다.

- 다만, 교환취득 대상인 청원군 소유의 재산중에 현재 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건축물을 처리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.

붙 임 :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.